

# 한국폼페병환우회 정관

制定 2016년 03월 05일  
改正 2019년 03월 31일  
改正 2022년 03월 28일  
改正 2023년 04월 23일  
改正 2024년 03월 24일

## 제 1장 총칙

### 제 1조 (목적)

본회는 국내의 유전성 희귀질환 폼페병으로 신체적·정신적 고통 받는 환자들의 질환관리 및 치료 향상에 기여하고,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적 권리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조 (명칭)

- ① 본회의 명칭은 “한국폼페병환우회(이하 ‘본회’)”라 칭한다.
- ② 본회의 영문표기는 “Korean Pompe Disease Society”로 하고, 약칭은 “KPDS”라 한다.

### 제 3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에 둔다.
- ② 이사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타 광역시 및 각 도에 지회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.

### 제 4조 (사업의 종류)

-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 1. 폼페병 환자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 및 등록관리 사업
  2. 폼페병 환자와 그 가족을 돋기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
  3. 폼페병 환자에 대한 직간접 의료비 지원 사업
  4. 폼페병 환자의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
  5. 폼페병 환자를 위한 의료 정보 및 사회서비스 등 정보 제공
  6. 폼페병 환자에 대한 생활지원 등에 관한 지원 사업
  7. 국내 유관단체와의 교류 및 국제적 교류에 관한 사업
  8. 폼페병 환자의 사회활동을 위한 편의시설 등 사회적 권리에 관한 사업
  9.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

- ② 제1항에 열거하는 목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회원 개인을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그 수혜자는 반드시 불특정 다수의 회원 중에서 선정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별도로 정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# 제 2장 회원

### 제 5조 (회원의 구분)

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1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면신청으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. 다만, 다,라 목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.
  - 가. 품폐병으로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사람
  - 나. 위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(가구당 1인에 한함)
  - 다. 5년 이상 계속하여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누적 후원금이 100만 원 이상인 자
  - 라. 매년 2회 이상 5년간 계속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, 향후 계속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
2. 준회원: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
3. 후원회원: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, 후원회비를 납부하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

### 제 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①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해 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과 임원 선출권을 가지며, 본회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 다만,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임원의 선출권은 제5조 제1호 가, 나목에 해당하는 회원에 한하여 인정한다.
- ② 만 15세 이하인 정회원은 성인인 보호자가 대신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며, 16세 이상인 정회원은 필요한 경우에 본인의 서면 동의하에 성인인 보호자가 대신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. 다만 동일인이 본인의 권리와 대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.
- ③ 준회원 및 후원회원은 총회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.
- ④ 회원은 본회의 정관이 정하는 사항 및 총회와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.
- ⑤ 정회원은 매월 1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⑥ 정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, 사업내용 및 회계처리에 대한 기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
- ⑦ 정회원의 상품권 지급은 가입년도 6개월 이후부터 지급한다.

### 제 7조 (회원의 탈퇴)

회원은 누구나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3년 이상 계속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,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, 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.

### 제 8조 (회원의 징계)

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나 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

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, 회원으로서 권리의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### 제 3장 임원

#### 제 9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: 1인
2. 부회장: 1~2인
3. 이사: 6~10인
4. 감사: 2인

#### 제 10조 (임원구성의 제한)

① 회장 및 부회장은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1항에서 규정한 임원 중 이사는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중 제9조의 구성인원 중 80% 이상을 구성인원으로 정해야 한다.

#### 제 11조 (임원의 선출)

- ① 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,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득표자로 결정한다. 다만,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 순으로 2명에 대한 결선투표를 한다.
- ② 부회장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.
- ③ 이사 중 총무이사를 포함한 3명은 회장이 지명하며, 나머지 인원은 총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며, 정회원 추천 요건은 2명으로 한다.
- ④ 감사는 총회에서 제2항에 준하여 선출한다.
- ⑤ 이사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#### 제 12조 (임원의 직무)

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한다.
3.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4.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5. 이 회의 재산상황과 회계처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.
  6. 제1호에 의한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는 그 결과에 대하여 회장의 소명을 받아 감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, 이사회에 보고된 감사결과와 의견은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 7. 총회에 보고된 감사의견은 본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개의 범위를 정회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한다. 다만, 이사회 보고 후 2개월 이내에 총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총회 전이라도 홈

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

8. 감사는 1년 중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정기 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고,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
가. 정기감사: 매년 상반기 기간(1월~6월)과 하반기 기간(7월~12월)로 하여, 당해기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실시한다.

나. 수시감사: 회장이 요구하는 경우,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, 감사 2명과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일반회원 5명이 연명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.

#### 제 13조 (임원의 임기 등)

- ① 본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임원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, 이사회 보선으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③ 부득이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#### 제 14조 (고문 등의 위촉)

-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후원회장, 봉사단장 및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에 관심이 깊고 명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전임 회장은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. 다만, 전임 회장이 선출직의 다른 임원에 선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위촉된 위원이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.

#### 제 15조 (임원의 징계)

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 등 징계를 할 수 있다.

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2. 본회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나 재산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
3. 회비납부, 회의참석 등 임원의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경우

#### 제 4장 총회

#### 제 16조 (총회의 기능)

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.

1. 임원 선출 및 지명 동의에 관한 사항
2.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
3. 예산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4.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5. 기타 이사회 또는 회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총회에 회부한 사항

### **제 17조 (총회의 소집)**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 개최한다.
- ② 임시총회는 임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 2명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.
- ③ 회장은 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의결권이 있는 모든 회원에게 통지한다. 다만, 본회의 홈페이지에 개최일 14일 전까지 공지할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.

### **제 18조 (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등)**

- ① 총회는 제6조 제1호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의 신상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서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결정한다.
- ②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③ 총회 개최 시 참석회원 수가 정족수에 미달할 경우 회장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, 이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자 3분의2 이상으로 한다.
- ④ 총회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은 의장과 이사회 구성원 1명 이상이 대표로 서명한다. 작성된 회의록은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⑤ 총회 개최 전까지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참석인원으로 본다. 전자위임장(구글)을 이용한 통신수단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.

### **제 19조 (의결 제척사유)**

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의 이해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

## **제 5장 이사회**

### **제 20조 (이사회의 기능)**
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2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3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회원의 가입 및 탈퇴와 징계에 관한 사항
6. 감사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
7. 고문 및 명예회장 추대 및 위촉에 관한 사항
8.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

## 제 21조 (이사회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다음의 임원으로 구성한다.
  1. 제9조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임원
  2. 제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임원
  3.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원
-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성원 중 제2호의 구성원은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나, 참석한 경우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 안건 중 임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사 1인 이상을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한다.

## 제 22조 (이사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정기이사회는 1년 중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 2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고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.
- ④ 회장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.

## 제 23조 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
-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회의를 재소집하여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회장의 결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되 이때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-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④ 의장은 중대한 사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참석하지 아니한 이사에게도 전화·이메일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표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토론을 생략하여도 안건의 취지가 분명하고 찬반의 표시만으로 의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의견을 표시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이 있은 것으로 본다.

## 제 24조 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 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대리인은 이 회의 회원이라야 하며,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온라인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.
- ③ 총회 및 이사회에서 행하는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. 위임장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그 권리와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제출된 위임장은 그 효력을 가진다.

## 제 25조 (이사회 회의록)

- ① 이사회를 개최할 때는 회의내용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본회의 사무실에 비치해야 하며, 참석이사는 회의록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결과는 10일 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회에서 비공개하기로 별도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### 제 26조 (재정)

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정회원의 회비
2. 정기·일시의 기부금
3. 회원의 찬조금 및 후원 단체의 후원금품
4. 정부기관 보조금 및 법인기관의 지원금
5. 수익사업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의 순이익금액

### 제 27조 (회계연도 및 회계처리)

-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- ② 본회의 수입과 지출 등 모든 회계처리는 결의서를 작성하고 복식부기 원리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.
- ③ 회계처리의 방법, 기출기준 및 서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 28조 (세입·세출 예산 및 결산)

- ① 본회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내에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 본회의 세입·세출에 대한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총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에 보고된 세출에 대한 결산보고서는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### 제 29조 (재산의 처분)

- ① 본회의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이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하는 통상의 목적사업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라도 분배할 수 없다.
- ② 본회에 속한 재산을 양도, 기증, 교환 또는 담보 제공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름 할 수 있다.

### 제 29-1조 (회계보고)

- ① 본회의 홈페이지는 3월30일, 국세청 홈페이지는 4월30일에 결산공시를 해야 한다.

## 제 7장 사무조직 및 운영

### **제 30조 (사무국)**

- ① 이 회의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며 총무이사가 회장단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통할한다.
-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**제 31조 (직원)**

- ① 본회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**제 8장 보칙**

### **제 32조 (환우회 해산)**

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### **제 33조 (해산 시 잔여재산)**

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·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.

### **제 34조 (정관의 개정)**

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

## **부칙**

### **제 1조 (시행일)**

이 정관은 총회에서 정관개정에 대한 의결이 있는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 다만, 이 정관개정에 의하여 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개시한다.

### **제 2조 (기타)**

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단체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